#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20

발의연월일: 2022. 9. 29.

발 의 자:이종배・구자근・김석기

김선교 · 김정재 · 박대수

성일종 • 안병길 • 태영호

홍문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무역경영(D-9) 체류자격(비자)으로 국내에 들어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7채를 매입한 뒤 임대사업을 한 외국인이 적발된 사례와 같이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 법률 제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거주, 영주 등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u>&lt;단서 신설&gt;</u>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
	는 자로서 거주, 영주 등 「출
	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를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
	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